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4월 12일, 황두영 의원 외 17명

나. 회부일자: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황두영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

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을 표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경형)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홍보 등에 관해 규정함.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14년 9.2% → '23년 4.2%)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고, 경상북도 관내 청소년의 흡연율('14년 11.3% → '23년 5.0%)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임.
-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흡연자 및 평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흡연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 교육이 제공되는 곳이므로 학교를 통한 맞춤형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의 제공 등 효과적인 흡연예방 사업의 운영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 아울러,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에서 현재음주율¹⁾은 전국 11.1%(위험음주율²⁾ 5.0%), 경북 13.2%(위험음주율 6.3%)인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의 흡연 예방과 함께 음주예방 교육에도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 현재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2) 위험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분율